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반동적성격

김 연 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략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김일성전집》 제95권 2폐지)

20세기초 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 인류력사상 그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총독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모든 권력을 그에 집중시켰으며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실권을 장악하고 그를 저들의 식민지정책실현에 복종시켰다.

력사적으로 형성된 일제의 호전성과 교활성, 악랄성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것은 식민지통 치력사상 가장 반동적인 통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무엇보다먼저 식민지력사상 그 전례를 찾 아볼수 없는 가장 포악한 통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초시기부터 저들이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는 식민지《총독통치》지배체제확립을 기도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총독통치》 초시기부터 《조선총 독부》를 정점으로 하는 식민지《총독통치》 체제를 세우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일본《천황》의 《칙령》에 따라 설치되였으며 조선총독은 《천황》이 직접 임명하였다. 조선총독은 《천황》에게 직속되여있었으며 그의 임명 및 해임 그 리고 권한행사에 관한 문제는 일본국회와 추밀원에서도 간섭하지 못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체 제성격은 총독에 의한 립법권, 사법권, 행정 권의 장악과 그 행사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르죠아국가들에서 립법권은 해당 국회에 부여되여있으며 그것은 어길수 없는 하나의 《법칙》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식민지통치시기 조선에는 그 어떤 국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립법권은 오직 총독에게만 쥐여져있었다.

일제는 《특수한 사정》과 그에 기초한 법 령권을 가지고있던 조선에 대해서는 립법 제도에서 일본과 같은 제도를 실시할수 없 다고 하면서 1910년 8월 긴급《칙령》 324 호로 《조선에 시행되는 법령에 관한 건》 을 발포하여 식민지조선에서만 적용실시 되는 립법제도를 조작했다.

그후 일제는 1911년 3월 다시《법률》30 호로서 조선총독에게《위임립법》즉 총독 자신이 명령으로 법률적성격의 사항을 규 정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총독은 《제령》권을 행사하게 되였으며 그것은 국회를 뛰여넘어 일본총 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승인만을 받으면 효력을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사법권행사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사법기관은 일 본본토의 사법기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 구였으며 다만 사법사무의 공조에서만 일 본 및 기타 식민지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서 로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조선총독부》 재판소는 일본의 대심원에 해당하는 고등법원, 공소원에 해당하는 복심법원,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에 해당하는 하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청의 3급 3 심제로 구성되였으며 사법행정은 일본의 사법성관할에 속하지 않고 철저히 《조선총독부》에 직속되여있었다. 또한 재판소의 구 성, 재판관의 임명, 신분보장 등 실무적인 문제들도 일본에서는 《법률》로써 결정하 였지만 조선에서는 조선총독의 단독적인 명 령인 《제령》에 의하여 결정되였다.

이처럼 조선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체제는 부르죠아정치리론에서 떠들고있는 기만적인 《3권분립》론마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오직 총독에게만 집중된 강권적인것이였다.

조선에서 실시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정권불분할정책(정치적권한을 나누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일관된것으로서 그것은 조선 인민에게 정치활동에 참가할 자그마한 가 능성도 주지 않는것을 근본전제로 한 통 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통치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민의창달》 과 《지방자치》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마 치도 조선인민에게 그 무슨 정치적자유를 허용하는듯이 가장하였다.

원래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총독통 치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세계여론을 오도하기 위하여 도 이하의 지방통치기구들의 성격을 《자치기 구》로 규정하였다. 특히 3.1인민봉기이후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일방적인 《지방 자치》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식민지통치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기만술책이였으며 지방통치기구들이나 민간적인 자치기구들마저 더욱 철저히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얽어매기 위한것이였다.

일제가 자치기구의 《표본》이라고 극구 찬양한 도와 부 및 면의 권한을 일본국내 의 부, 현, 시, 정, 촌 등과 대비해보면 그 실상을 잘 알수 있다. 일본국내의 각급 지 방통치기구들은 형식상으로나마 의결기관 이며 그 의원은 철저히 선거제에 의하여 선 발되였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경우

도회 및 부회는 명색상으로는 의결기관으로 규정되였지만 여기에는 참사회(리사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나 부 자체의 의안발표권이 부여되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해당 의원선발은 임명이나 납세자격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격》에 따른 제한적인 선거제였다. 뿐만아니라 조선총독은 도에 대하여 강제예산권을 행사하였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회 및 부회결정과 그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할수 있었다.

일제는 부 및 읍면들에 조직된 학교조합, 학교비 등 자치단체들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부합되는 조건에서만 그 운영을 허락하였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점유한 식민지들에서는 해당 나라의 괴뢰정부가 조작운영되었으며 표면상으로나마 일정한 독자권이 행사되였다. 일제가 강점한 만주국이나 남양청, 화태청(싸할린)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 사,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가장 포악한 식민지통치체제를 조작하고 실시하였다.

일제는 대만강점직후인 1895년에 내각 에 《대만사무국》을 설치한것으로부터 시 작하여 1896년에는 척식무성, 1910년에는 내각 척무국을 설치하여 식민지들에 대한 통치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후 1929 년 6월《칙령》152호로《척무성관제》를 공 포하고 그의 기본부서로서 1개의 부와 3 개의 국 즉 《조선부》와 《관리국》, 《식산국》, 《척무국》을 조작하였다. 일제는 척무성《관 리국》으로 하여금 당시 저들의 식민지였 던 《대만총독부》, 《관동청》, 《화태청》(싸 할린), 《남양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 면서도 《조선부》만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에 관한 사무를 단독으로 관할하게 하 였다. 그리고 《조선부》의 부장은 의례히 척 무성차관을 겸임하도록 하고 오직 그만이 조선총독과 《합의》하여 조선에서의 산업,

교통, 통신, 금융, 조세, 해외척식에 관한 사 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종래 조선봉건왕조의 실제적인 지배자였던 관료들의 권력을 빼앗고 그를 장악하는데 힘을 돌렸으며 일부 지방통치기구들에 친일적인 조선인관리들을 임명하고 그들이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였다.

1918년《조선총독부》및 그 소속관서의 관리인원총수는 2만 1 302명이였으며 그 가운데서 일본인은 1만 2 865명으로서 전체 관리수의 60.5%를 차지하고있었다. 그후 그 수는 계속 늘어나 1920년말에는 61.5%, 1925년에는 64.4%로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는 다음으로 군사강권적성격이 그 어느 식민 지나라들보다 더 강하고 식민지통치전반 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친 반 동적인 통치였다.

일반적으로 식민지강탈을 위한 제국주 의자들의 침략책동은 군사적인 방법에 의 거하며 해당 나라들에서의 식민지통치는 군 사폭압적성격을 띠게 된다.

조선에서 일제가 실시한 식민지통치는 그의 침략적이며 호전적인 성격으로 하여 다른 식민지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한 군사강권적성격을 띠였다.

일제는 청일, 로일전쟁을 도발하고 수많은 침략무력을 우리 나라에 들이밀었으며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방대한 무력을 주 둔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의 주권을 강 탈하였다.

일제는 1904년 10월 《조선주차군사령 부》를 정식 조작하여 한성(서울)에 배치함 과 동시에 《전시편제》의 무력을 《평시체 제》로 개편하여 우리 나라에 주둔시켰으 며 이러한 침략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을 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완전한 독점적식민지로 만들었고 군사강권적인 방 법으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총독통치》로 이행하면서 일제는 우리 나라에 주둔 시킨 침략무력을 《조선군》으로 명명, 개편 하고 그를 더욱 강화하면서 식민지폭력체 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다.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군사강권적인 토대우에서 가 장 악랄하게 실시하였다.

조선에서의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군사 강권적성격은 《조선총독부》및 그 소속 행 정기구들에 대한 《조선군》의 영향력행사 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일제는 《총독통치》 전기간 식민지행정 기구들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강하게 행 사하였으며 특히 1930년대 중엽이후 《총 독부》행정체제를 완전히 군권화하였다.

이 시기 일제의 《조선군》은 단순히 조 선《방위》를 위한 군사적임무에만 주력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징병, 《내선일체》와 《황 국신민화》의 실현 등 실제적인 통치상의 《중대문제》들을 직접 장악, 집행하였다.

일제는 조선통치에 대한 문제를 《조선 총독부》에만 맡겨두지 않았으며 《조선군》 과 서로 협력하여 《조선통치의 개선에 매 진》하기 위한 방책을 토의결정하였다.

그 방책의 하나가 조선인지원병제도의 실행이였다. 지원병제도는 침략전쟁에 필 요한 인적자원확보의 목적과 함께 보다 중 요하게는 조선통치의 최대의 방책이였던 《황국신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 의 하나였으며 그 중요한 구성부분이였다. 이 《중대》문제를 직접 발기하고 맡아나선 것이 바로 《조선군》이였다.

《조선군》은 《유사시》 조선사람들을 병력자원으로 동원시킬것을 규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하였으며 1937년 7월에 《조선인지원병제도에 관한의견》을 정식 일본국회와 륙군성에 제기하였다.

일제는 《륙군특별지원병령》, 《륙군특별 지원병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륙군병지 원자훈련소관제》등을 련이어 공포하고 그 집행을 《조선군》에 전적으로 위임하였다.

실례로 《조선총독부륙군병지원자훈련소》는 그 명칭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에 소속된 기관이였으나 훈련소의 예산만 《총독부》가 지출하고 그외의 모든 업무는 일체 《조선군》사령부가 파견한 현역군인들에 의해서 집행되였으며 그에 대해서 《총독부》의 관계부서들은 일체 관여하지 못하였다.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군》의 영향력 은 행정통치기구인 《총독부》의 기구편성 에서도 강하게 행사되였다.

실례로 일제의 《조선군》은 《국민체력향상을 위해 조선에서 보건위생시설의 개선》을 주장하면서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부터 체력증진, 보건위생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고 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독부》에 한개의 국을 새로 내올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총독부》기구개편에서는 그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후생국이 새로 설치되였다.

《조선군》은《병참기지》로서의 조선의 물적자원통제와 관리를 위하여 자원개발, 물자동원, 군수산업의 확대를 목표로 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 방공, 기상, 교육, 훈련, 마사, 위생, 농림 등의 요구사항을 《총독부》에 정상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집행을 담당한 《자원주임참모》를 따로 임명하여 《조선총독부》안에 주둔시키였다.

《자원주임참모》는 《조선군》의 대변자로서 민간기업이나 은행, 단체들은 물론 《총독부》와 그 아래기구들에 대한 조정자적역할을 수행하였다.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군》의 영향력은 《자치》단체들의 운영에서도 나타났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동치를 실시하면서 그의 《원만한》수행을 위하여 수

많은 자치기구들을 조작, 운영하였다. 일 제는 이러한 기구들에 대한 군사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구직제에 겸임제를 내오고 《조선군》우두머리들을 무조건적으로 임명, 배치하였다.

실례로 1938년부터 광란적으로 벌어진 《국민총력운동》의 실천적담당기구인 《국민총력조선련맹》을 들수 있다.

일제는 《국민총력조선련맹》을 조작하면서 그의 목표와 기구체계가 일본국내에서 벌어지고있던 《대정익찬운동》과 동일하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대정익찬운동》의 직접적담당자였던 《대정익찬회》와는 달리《국민총력조선련맹》은 《총독부》행정기구체계와 완전히 일치되였으며 그 요직에는《조선총독부》고위관료들과 함께 《조선군》우두머리들이 배치되였다.

일제가 사회단체로서의 《국민총력조선 현맹》기구내에 군부우두머리들을 배치한 것은 명백히 식민지조선에서의 모든 기구 와 《운동》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을 강화 하기 위한것이였다.

이외에도 《조선중앙정보위원회》, 《조선 방공협회》등 각종 기구, 단체들에 대한 《조 선군》의 영향력행사는 비상히 높았으며 그 것은 다른 식민지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특징으로 되였다.

이처럼 일제는 조선에서 세계 그 어느 식 민지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동 적이며 야만적이고 가혹한 중세기적인 식 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의 조선에 대한 적대시 정책은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것으로 되고 있으며 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은 날이 갈 수록 현실화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투철한 반제반일의식을 가지고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